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358호 | 2017년 9월 19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이내영 | www.nars.go.kr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및 향후과제

김창호*

1. 들어가며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 운전자,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 등과 같은 사람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직”)라고 부르는데 현재 산재보험 관련 규정¹⁾외에는 특수직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관한 법률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수직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근로종사자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들 중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만 살펴보려 한다.

현재 특수직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직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입법권고²⁾를 발표(’17.5.29.)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20대 국회에서도 특수직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법안 등이 다수 발의되어 향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역시 새 정부와 국회의 특수직에 대

한 입법권고와 다양한 법안발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및 향후과제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표 1] 20대 국회 특수직 관련 주요 법안발의 현황

구분	대표 발의자	일자	주요내용
산재해상보험법	한정애(민) 홍영표(민) 문진국(한)	’16.6.30 ’16.7.27 ’16.8.12	- 당연적용 원칙, 적용제의 신청요건 강화 - 일정기간 이상 휴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강병원(민)	’16.8.12	- 특수직 적용제의 신청제도 폐지
	하태경(바)	’16.9.1	- 당연적용 원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시 적용제외 인정
	서형수(민)	’16.11.3	- 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정의 확대 및 특수직 적용제의 신청제도 폐지
고용보험법	한정애(민) 문진국(한)	’16.6.30 ’16.8.12	- 특수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장석춘(한)	’16.9.29	- 특수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소득·노무제공계약 개시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수납제한법	한정애(민)	’16.6.30	- 특수직 고용보험료 분담방식 규정(사업주 50%)
	문진국(한)	’16.8.12	- 특수직 고용보험료 요율산정 근거 마련
	강병원(민)	’16.8.12	- 특수직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 국가는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의 50% 내에서 지원 가능
국민연금법	장석춘(한)	’16.9.29	- 특수직의 고용보험료 부담주체, 사업자에게 기준보수 신고의무 부과, 보험료 산정 세부사항 등 규정
	조경태(한)	’17.3.21	- 특수직을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인정(사업자가 연금보험료의 50% 부담)

2.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1) 보험설계사의 지위

현재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의 계약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닌 보험모집에 대

1) 「산재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2) 대통령이 정부기관의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이도록 지시(5.25)를 내린 후 첫 번째 입법권고임

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³⁾ 상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한편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대한 판결⁴⁾에서 대법원은 지휘·감독 여부 등 종속관계에 대한 여러 지표⁵⁾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 행정해석 및 노동위원회 모두 일관되게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설계사는 다른 특수직과 달리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여부를 본인이 입증⁶⁾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산재보험 선호도가 낮다.

산재보험보다 개별 보험사에서 설계사를 위해 제공하는 단체보험이 보장범위, 보장대상 시간, 보험료 부담 측면 등에서 산재보험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2]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비교

구분	단체보험		산재보험
보장 범위	업무수행 연관성 불문	>	업무상 발생한 사고/질병
보장대상 시간	1일 24시간 계속보장	>	업무수행시간
보험료 부담	설계사 본인부담 없음 (회사부담 100%)	>	설계사 본인부담 50% (회사부담 50%)

자료: 보험업계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또한 2013.8월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보다 단체보험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1호

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5) ① 구체적, 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②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③ 비품·작업도구 등 소유관계, ④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등

6) 보험설계사는 영업시간과 장소 등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활동함

[표 3] 단체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선호보험		재해사고에 대한 회사의 단체보험 가입여부		
단체보험	산재보험	가입해줌	미가입	무응답
75.7%	24.3%	95.6%	1.7%	2.7%

주: 설문대상 850명(9개 생보사, 2,740명 중 전화조사), 신뢰수준 : 95% (±3.4%p)

(3)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설계사는 시장 진출입에 별다른 제약이 없고, 위탁계약이 유지되면 언제든지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실업’이라는 개념 적용이 어려우며,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 필요성 또한 높지 않다.

또한,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에 대비한 제도로써 자발적 이직은 고용보험 수급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의 이직 사유는 소득상승 등을 위한 자발적 이직이 대부분으로 설계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선택권 존중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13.11) 결과에서도 보험설계사 중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원한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으며, 원하는 사람만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고용보험 도입 시 희망하는 가입형태

구분	무조건 가입	원하는 사람만 가입
보험설계사	23.0%	77.0%
전체 특고직	26.9%	73.1%

자료: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설문조사」, 2013.11.

(4)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국민연금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여부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및 임의가입자로 분류하는 체계이며, 사업장 가입자 확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범위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후 논의될 문제이다.

설계사의 국민연금 가입은 보험회사의 경제

적 부담 가중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되는데, 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가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할 경우 보험사는 연간 3,015억원(생명보험 1,900억, 손해보험 1,115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⁷⁾

(5) 보험설계사의 구조조정 가능성

만일 특수직인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업계는 연간 약 6,037억원(생명보험 3,803억, 손해보험 2,234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5] 4대 보험 가입 시 보험업권 부담예산액

(단위: 백만원)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총계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생보	189,957	129,170	4,230	29,549	27,438	380,344
손보	111,552	75,855	2,484	17,353	16,113	223,357

주: 전속설계사 194,206명(생보 110,969명, 손보 81,330명), 평균소득(월소득기준) 생보 317만원, 손보 254만원

자료: 보험업계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보험업계는 4대 보험 적용 시 보험설계사 채널의 관리비용 급증으로 보험회사의 생존을 위한 비용절감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주로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능력 설계사 57,624명('16년 기준 30%)에 대한 구조조정 및 영업현장의 일자리 축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표 6] 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의 월평균 소득 분포

(단위: 명, %)

구분		50 이하	50~100	100~200	200~500	500 초과	계
		생보	인원	18,975	11,995	23,365	36,168
	비율	17.1	10.8	21.1	32.6	18.4	100.0
손보	인원	18,404	8,250	16,562	24,296	13,818	81,330
	비율	22.6	10.1	20.4	29.9	17.0	100.0

자료: 보험업계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6년 업무보고서 기준)

7) 보험업계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특히 보험설계사는 가정주부, 경력단절녀 등 여성 및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 구조조정 시 이러한 계층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6년말 생·손보험회 설계사 등록시스템 기준 보험설계사(196,796명) 중 여성설계사(146,101명) 비중은 74.2%이며, 50세 이상 고령자(88,326명) 비중은 44.9%이다.

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특수직 문제 해결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특수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제20대 국회 이전부터 다양한 법안이 발의 및 폐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제20대 국회 들어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고 새 정부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입법적 보완에 대한 기대가 큰 시점이다.

특수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든, 기존의 관련 법률에 특수직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삽입하여 확대적용하든 지금이 특수직 보호입법의 결실을 맺을 적절한 시점으로 보인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2) 설계사의 의사 확인 절차 필요

보험사 주장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보다 단체보험을 선호하고, 고용보험 역시 선택적 가입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런데, '16.8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중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험사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 보험설계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존

재하지 아니하여 4대 보험에 대한 설계사의 진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설계사들의 생각도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 듯하다.

차제에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당사자의 분명한 니즈를 확인한 후 4대 보험 확장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일본사례 검토를 통한 개선안 마련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 4대 보험과 노동3권을 보장하나, 미국은 보호 법규정이 없이 노동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동일한 보험설계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1940년대부터 보험설계사를 준임직원 형태인 1년 단위 계약직(전속조직)으로 고용하여 4대 보험문제를 풀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는 여전히 보험설계사를 특수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특수직 보호 법률 관련 해외사례

구분	법적지위	보호범위	비고
독일	- 보호 법규정 있음 - 근로자와 유사한 자로 정의, 개념명확화 - 「노동법」, 「단체협약법」상 경제적 종속 지위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자	4대보험보장 노동3권보장	「해고제한법」 미적용
프랑스	- 정의조항은 없으나, 특수직 직종별 열거, 차등적용(「노동법」) - 대리인, 외판원, 모델, 직업거지, 소매지배인 - 경제적 종속성 판단	4대보험보장 노동3권보장 3개월 시용기간 설정가능	정리하고 관련 「노동법」 규정 미적용
미국	- 보호 법규정 없음 - NLRA(노조법) 적용(×) - FLSA(근기법) 적용(×) - FUTA(실업세법) 적용(×)	4대보험보장(×)과 노동3권보장(×)	특고 문제에 대해 노동시장 자율에 맡김
일본	- 보호법규정 없음 - 판례에 다름 - 일본보험사는 설계사를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특수직 이슈 해소	판례에 따른 「노동조합법」상 제한 없이 노조설립 가능	설계사(계약직)를 준임직원 고용 적용 4대보험적용 노조결성 가능

주: NLRA(「노조법」):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FLSA(「근기법」): 「The Fair Labor Standard Act」,
FUTA(「실업세법」):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4)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4대 보험 가입시 보험업계는 연간 6,037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금감원

이 발표한 '16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전체 순이익은 6조1,714억원(생보 2조6,933억원, 손보 3조4,681억원)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보험업계 추정 추가비용은 보험업계 순이익의 10% 수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저능률 설계사 구조조정 가능성은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는 분리한다는 이른바 제판분리 정책에 따라 보험사 스스로 판매조직을 보험사 전속 대리점으로 분리하여 자연스럽게 저능률 설계사를 구조조정(감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험 상품 비교판매 활성화정책에 따라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대형법인보험대리점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이동하는 현상도 가속화되어 설계사의 자연스러운 감소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바 보험업계가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맺으며

이 글에서 지금까지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및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부가 제공하는 4대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직이 실직 등 긴급한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 최소한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며 보험업계 역시 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불편과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인바 정부는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당사자들의 명확한 입장 확인과 함께, 국회·업계·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고용시장의 균형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